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업무 위탁과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8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업무 위탁과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업무 위탁과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안 제141조의5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1조의5(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업무의 민간위탁이란 업무의 수탁자가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이 되는 경우, 즉,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두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²⁾에서 공공기관 등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³⁾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

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등 업무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산·학·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7., pp. 253-260.

용은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됨.

또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업무의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의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탁기관을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해당기관은 법률적 지위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향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여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당 수탁 기관을 새로이 지정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수행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수탁기관을 특정하는 방식보다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유형을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467